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6나200177 손해배상(지)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정공진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배성수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2가합547158 판결

변 론 종 결 2026. 7. 9.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¹⁾.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까지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L'을 'I'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행의 '원고 업체의'를 '피고 업체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3행의 '피고소인인이'를 '피고소인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마지막 행의 '(2)'를 '(3)'으로 고쳐 쓴다.

1)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택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5행의 '다'를 '라'로 고쳐 쓴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제1심은 제1심감정인 H 주식회사의 2025. 5. 1. 자 감정보완회신결과(을 제14호 증) 중 위 감정인이 기술적 사항을 직접 확인한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프로그램 설치 경위나 사용 방식, 피고의 행위 태양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감정의 범위를 벗어난 추측에 불과함을 이유로 증명력을 배척하였는바, 피고는 제1심의 위 판단은 감정결과에 증명력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판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것으로 법원이 감정결과를 믿어서 이에 따른 사실인정을 하느냐는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기술·과학·의학적 판단 등 감정인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요하는 전문영역에 대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피고가 주장하는 위 대법원 2011다103199 판결 역시 주식양수대금의 기준이 되는 자산가치평가에 대한 감정결과에 증명력이 문제된 사안이다), 감정인의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칙과 무관한 사실인정이나 규범적 판단은 궁극적으로 법관이 증거조사와 심리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부분으로, 감정결과에 이에 대한 감정인의 견해 내지 추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이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306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C 프로그램 3.0 버전 중 M160 전체 모듈로, 정품사용료는 926,658,000원 가량이다)은 피고가 구매한 프로그램[C 프로그램 4.0 버전 중 3D 설계를 위한 기본응용프



로그램인 "J"의 1개 모듈로, 정품사용료는 16,447,000원 가량이다(피고는 이를 8,800,000원에 구매하였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K" 등 추가 모듈이 포함된 모듈 조합형이고, 피고가 위 추가 모듈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지불한 후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하는 사실, 피고는 위 추가 모듈이 구현하는 형상복사 기능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업그레이드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1심감정인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 원고가 판매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이 단순히 이 사건 프로그램이 피고가 구매한 프로그램의 하위 버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 설치 경위 등 역사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신의 추측 내지 짐작을 밝힌 부분은 디지털포렌식 등 자신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에 기하여 감정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객관적인 증거와도 상충된다. 따라서 위 부분의 증명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제1심판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피고가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를 새로 주장·증명한 바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 항변과 관련하여, 제1심에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주장한 2019. 6. 10. 이후로서, 피고가 피의자신문을 받거나 확인서를 작성한 2019. 7. 5. 무렵 내지 2019. 8. 21.경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손해를 인지하였으므로 위 각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도 2022. 8. 22. 자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19. 7. 5. 무렵 내지 2019. 8. 21.경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송미경

판사 김광남